

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1- 63호

『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』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1년 9월 7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- 가.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기하기 위해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.
- 나.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우수한 사회복지사 확보하고, 사회복지 수요에 능동적인 대처로, 우리 시의 사회복지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의 교육에 관하여 세부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지원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 함.(안 제2조)
- 나. 보조사업의 범위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와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경비로 함.(안 제3조)
- 다. 사업수행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인천지부로 함.(안 제6조)

라.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함.(안 제8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6일(월)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(참조 :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22, 팩스 032-440-8764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-주 소 -성 명 -연락처			

4. 참고자료

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

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의 교육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보수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교육대상) 이 조례의 교육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 한다.

제3조(보조사업의 범위) 보조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필요한 경비
2.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경비

제4조(보조금의 지원 등) ① 시장은 제3조 규정에 의거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수행자에게 보조사업 및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자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사업수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5조(보고 및 검사)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수행자는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수행기관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(사업수행기관)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5조제5항에 따라 보건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인천지부로 한다.

제7조(운영규정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수행기관이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8조(관계기관 등의 협조)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검토와 발체사항

관계 법령	☐ 사회복지사업법 - 제13조(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) 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- 제5조(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)
관련법규 정비대상	
관련자료	

관계법령 발췌사항

【사회복지사업법】

- 제13조(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)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교육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.
- ③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⑤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·방법 및 내용과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【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】

- 제5조(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교육을 명하려면 미리 교육 목적·내용·시간 등을 알려야 한다.
- ②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.
1. 군복무, 질병, 해외체류,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
 2.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
 3.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
-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5항에 따른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사회복지윤리,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기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⑤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협회에

위탁한다.

⑥ 협회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보수교육 대상자명단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